

◇제정이유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의 절차·방법, 지원금액의 지급방법,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안 제2조)

재난적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나.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통보(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다.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지급 신청(안 제5조 및 제6조)

- 1) 입원 중인 사람은 지원금액을 그 입원한 의료기관 등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 등에 알려야 하고, 지원대상자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의료기관 등의 계좌 사본, 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액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2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서류”를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을 각각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첨부서류란의 제1호 중 “서류”를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을 “「근로기준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제1호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 신설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 2018. 7. 1. 시행 등)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의 법률 위임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취업규칙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386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29일

대 통 령 문 재 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장이 안전을 검토한 결과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